



제340회 임시회

2015.06.10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
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
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 광 희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5년 06월 01일

○ 회부일자: 2015년 06월 02일

3. 제안이유

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,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.(안 제3조)

나.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(안 제4조)

다. 해마다 정기 및 수시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사전검사로 실시하도록 함.(안 제5조)

라. 검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)

마.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규정함(안 제7조)

바. 학교급식 관계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도록 함.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,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 제3조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각 급 학교별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해마다 정기 및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사전검사로 실시하도록 하였고, 검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 사항을, 안 제8조는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교육·연수 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음.
-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확대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방사능 뿐 아니라 잔류농약, 중금속 등에 오염된 식재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,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.

- 이런 측면에서 볼 때,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전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 사후조치 등 방사능 검사체계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둔 이번 조례제정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, 검사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실효성 있는 식재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을 명확히 하고, 학부모나 학교직원 검사의뢰 반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

- 학교급식위원회위원의 심의기능과 역할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이 시행규칙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관계 법령 발췌

□ 학교급식법

제5조(학교급식위원회 등)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.

1.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
2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
3.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2. “유해물질“이란 농약, 중금속, 항생물질, 잔류성 유기오염물질, 병원성 미생물, 곰팡이 독소, 방사성물질,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□ 식품위생법

제15조(위해평가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 등 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3.3.23.>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·제조·수입·가공·사용·조리·저장·소분·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. 다만,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 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
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후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3.3.23.>

⑥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,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2(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“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식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나 위해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로서 제 15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1.6.7.]

제90조의2(정보공개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,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1.8.4.]

□ 원자력안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<개정 2013.3.23., 2014.5.21.>

1. “원자력“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.
2. “핵물질“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.
3. “핵연료물질“이란 우라늄·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핵원료물질“이란 우라늄광·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것을 말한다.
5. “방사성물질“이란 핵연료물질·사용후 핵연료·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(原子核分裂生成物)을 말한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[전문개정 2012.3.21.]

비용 추계서

1. 비용추계내용

○ 재정수반요인

-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예산 추계

2. 비용추계

- 2015년 본예산에 세워져 총 50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, 4,5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(매년 확대 예정)

구분 \ 연도	2015년도	2016년도	2017년도	2018년도	2019년도
방사능검사비	4,000천원	4,400천원	4,800천원	5,200천원	5,600천원
검체물품비	500천원 (50건)	550천원 (55건)	600천원 (60건)	650천원 (65건)	700천원 (70건)
합 계	4,500천원	4,950천원	5,400천원	5,850천원	6,300천원

3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○ 기초자료 및 세부내역

- 2015년 수산물 방사능 검사(매년 확대 운영 예정) : 4,500천원
 - 방사능 검사비(검사기관 : 충북보건환경연구원)
50건 * 80,000원 = 4,000천원
 - 검체 물품비
50건 * 10,000원 = 500천원

4. 작성자 : 체육보건급식과 식품위생 6급 김영숙(290-2163)